

2024. 9. 5.(목) 제 4 2 0 회 임 시 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

# 충청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의영 의원 등 7인

#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4년 8월 23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26일

#### 3. 제안이유

충청북도 농업인의 영농 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# 4. 주요내용

-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(안 제3조)
- O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 (안 제4조)
- O 충청북도농업작업안전재해예방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(안 제6조)
- O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(안 제7조)
-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(안 제8조)
- O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 (안 제9조)
-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(안 제10조)

#### 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# 가. 발의배경

- 농업은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실외활동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국제노동기구(ILO)는 농업을 광업·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을 만큼 재해위험이 높은 산업임
  -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2년 농업의 산업재해율은 0.81%로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(0.65%) 대비 0.16%포인트 높음<sup>1)</sup>
- O 하지만 자영 농업인과 소규모 농업사업장의 안전재해 예방과 관리 역량, 재정, 전문인력 확보는 취약한 실정
- 이와 관련하여 2022년 6월 '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'에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규정이 신설되는 등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관리에 대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
- 이에 발맞춰 충청북도 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·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함

# 나. 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

○ 안 제4조는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<sup>1)</sup> 농민신문, 2024.2.7. 농작업 안전재해 뒷짐진 지자체…관련 조례 제정 10%뿐

- 안 제6조는 충청북도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협의체를 통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지원사업을 심의·자문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타당하다 판단됨
- 안 제7조~제8조는 충청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그에 따른 예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였으며 타당하다 판단됨
- 안 제9조에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한 것은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
- 안 제10조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연계강화가 기대되며 적절하다 판단됨

# 다. 상위법령 등 검토

○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3제1항에 따르면 "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"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서 "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

한다."고 되어 있는바 충청북도 차원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

### 라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농업 분야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 유해・위험요인이 많지만 안전재해 예방에 대한 관리는 취약한 실정으로 이에 충북도 차원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짐
- (타당성) 본 조례에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
  △협의체 설치 △예방계획 수립 △지원사업 △예방교육 △협력
 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- O (법적합성)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- (종합의견) 조례의 제정은 농업 노동환경을 개선하고, 농업인의 삶의 질의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, 나아가 청년농업인의 유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되며, 필요성,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 보여짐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사업들을 발굴・시행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